



### 제목 特급소방안전대상물 관련 문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특급소방관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부지 내에 1개 건물이 15만 다른 건물이 6만인 경우(합쳐서 연면적 21만)인 경우도 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하층을 포함해 30층이면 특급안전관리 대상인데 만약 지상 23층 지하 7층인 경우에도 포함되는지요.

하나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특급소방안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대상은 특급소방안전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이상인 경우에도 특급소방안전대상물에 해당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02-2100-5330)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제목 하도급법 적용대상 문의

자체 발주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원·수급사업자의 요건(중소기업자 여부, 시공 능력평가액 및 상시종업원수 규모 비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건설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다의 (9)항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원·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건설위탁)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문의

모든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요청 대상 비점오염원 사업장은 1.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등의 업종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제목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문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특별 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입니다. 허가 대상 배출시설을 제외한 모든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설치신고서)',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허가 대상의 경우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가 필요하며, 변경허가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목 의료폐기물을 처리 절차 문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는 시·도지사(종합병원 이외의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종합병원)에 '폐기물 처리계획서', '환경부령을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보건 환경연구원, 인정기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 하시면 됩니다.

## 제목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문의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하수관거는 표준시방서가 없어 하천, 도로 등의 시방서 및 하수시설기준 등을 인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공사비 및 품질 상이로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지적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입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므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적용해야 할 기준입니다. 내용은 총칙, 관거공사, 중계펌프장 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 특수공사, 자재구입시방서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사지침으로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시공효율 증대를 위해 최신 선진기술 등도 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http://www.keco.or.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http://www.kwwa.or.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